

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

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본인은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」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(이하 "원 약정서"라 한다)에 추가하여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약합니다.

제1조 (서류의 제출) 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 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.

- ① 제출서류
가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서(또는 현금입금 신청서)
나.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
다. 기타 귀 행이 요청하는 서류
- ② 본인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서류 전송 및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서류를 귀 행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- ③ 본인의 거래처(구매기업)가 전송하여 귀 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한 후 대출신청 또는 현금입금신청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제1항의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
제2조 (입금계좌 지정)

대출금 또는 상기 채권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.

계좌번호 : _____ 예금주 : _____

제3조 (개별대출의 실행)

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(인터넷) 등의 방법으로 귀 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[귀 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, 그 채권의 채무자인 _____(이하 "거래처"라 합니다)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 행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, 이하 "매출채권"이라 합니다]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, 귀 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. 단 본인이 귀 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

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

-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총당하기로 하며, **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 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**
- 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(본인 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 분,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

제5조 (대출의 제한)

- ① 본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②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귀 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귀 행 전산상의 장애로 귀 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③ 기타 귀 행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귀 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 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④ **“원 약정서”상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,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‘거래처의 협력기업들(본인 포함)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’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**

제6조 (지연이자 추취)
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“상생협력법”）」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“하도급법”）」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(할인료 또는 대출이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① 구매기업이 「상생협력법」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
- ② 구매기업이 「하도급법」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



